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“특례 자격 조건” 관련 안내

▣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 드린 대로 “2월 29일”까지 중국에 입국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.

▣ 부득이한 사정으로 “3월 1일” 이후에 중국에 입국하게 될 경우 다음 안내를 숙지 바람.

※ 본 안내문은 대교협에서 공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음.

※ 대교협 규정에서는 큰 틀만 제시하고, 나머지는 개별 대학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케이스는 지원 희망 대학에 직접 문의 바람.

▶ 12년 특례(전교육과정 이수자)

- (대상) 초등, 중등, 고등학생에 해당(학생 본인만)
- (내용)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 임시 체류 경우도 **인정 권장**

※ “인정 권장”이라 함은 ‘인정해 주기를 권고한다’는 의미이므로 대학에 따라 달리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 바람.

▶ 3년 특례(중고교 3년과정 이수자)

- (대상) 중학생, 고등학생에 해당
- (내용) 고등학교 1개 학년을(고1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) 반드시 포함하여, 중고등학교 과정을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한 자에 해당(재학기간 중 보호자 모두 반드시 학생과 동반해야 함.)

※ 본교의 1개 학년 기간 : 3월 1일(학기 개시일) → 다음 년도 3월 1일 전 날.
전편입생의 경우 : 전편입일 → 다음 년도 전편입일 전 날

※ 체류 기간(**전체 3년이 아니라, 1개년마다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.**)

- 학생 : 학생 이수 기간의 3/4 이상(**한국에 91일 이상 머물면 안됨**)
- 부모 : 학생 이수 기간의 2/3 이상(**한국에 121일 이상 머물면 안됨**)
- **방학, 개인체험학습, 공결, 병결, 인정결 등 모든 사유와 상관없이 한국에 머물면 일수에 포함됨.**

▶ 주의사항

- 재학생 중 “딱 3년 자격 조건”에 해당하는 경우 : 한국 체류일수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함
- 해외학교에 처음 오는 신입학, 전편입 학생의 경우

√ 반드시 2월말까지 학생, 학부모 모두 중국에 입국해야 함.

√ 나이스상 3월 1일자로 입학, 전편입 처리가 되어야 함.

※ 2020년 1월에 졸업한 12학년 학생도 개별적으로 체류일수 관리 바람.